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5제1항 관련)

1. 표시방법	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을 선별 포장한 경우에는 해당 계란의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한다. 나.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계란 껍데기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 라. 다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새로운 이력번호가 표시될 때마다 확인·관리해야 한다.
2. 이력번호 관리 등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